

2022년 테마 형법 전면개정판 정오표

〈총론 I 권〉

- p.274 테마 35 타이틀 글자 수정
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(허용구성요건의 착오)

〈총론 II 권〉

- p.64 테마 10번 “2. 필요적 공범” “② 대항범” ㉠ 끝부분 삭제(“자기낙태죄와 업무상 동의낙태죄” 삭제)
㉠ 서로 다른 법정형이 규정된 경우 : 수뢰죄와 중뢰죄,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, 도주죄와 도주원조죄 13. 법원행시
- p.92 14번 문제 해설 ④ 괄호 안 수정
④ × : ~ 야기한 경우(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질적 착오) 실행자는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되고 다른 공동정범은 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p.125 상단 관련조문 제32조 제2항 괄호 안 추가
② 중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(감경할 수 있다 ×).
- p.161 문제 4번 해설 ① 판례 수정
① 대판 2015.9.10, 2015도8592
- p.240 상단 관련조문 제56조 제2호 끝에 괄호 추가
2.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(특수 교사·방조)

〈각론 I 권〉

- p.156 문제 19번 해설 ④ 수정
④ × :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×,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○(대판 2005.3.25, 2003도5004)
- p.197 테마 27 중간 아미박스 수정

불법영득의사란 ① 권리자를 배제하고(소극적 요소 :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지위를 계속적·지속적으로 제거·배제하려는 의사 ▶ 사용절도(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곧 반환할 의사로 타인의 재물 절취) ⇨ 절도죄 ×), ②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·처분할 의사(적극적 요소 : 소유권자처럼 지배력을 행사하여 이용·처분하려는 의사 ▶ 손괴의사로 재물취거 후에 손괴 ⇨ 손괴죄 ○, 절도죄 ×)를 말한다(대판 1996.5.10, 95도3057). 20. 경찰간부

p.283 문제 10번 지문 ④ 수정 및 해설 ④ 수정

- ④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,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있다.

〈해설〉 ④ 대판 2020.6.18, 2019도14340 전원합의체

〈각론 II 권〉

p.28 하단 8번 판례번호 수정

8. 회사경영자가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통한 복리증진보다는 적대적 M&A로부터 안정주주를 확보하여 경영권 계속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종업원 자사주매입에 회사자금을 지원한 경우(대판 1999.6.25, 99도1141) 04. 입시, 15. 경찰승진

p.244 문제 1번 해설 ㉠ 수정

㉠× :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취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취액으로 인정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(대판 1977.3.8, 76도1982).